대한의사협회
KOREAN MEDICAL ASSOCIATION
"국민을 위한 바른 의료, 대한의사협회가 함께 합니다"

(우) 04373 서울특별시 용산구 청파로 40 삼구빌딩 7~8F [http://www.kma.org]/전화(02)6350-6560 / 전송(02)790-8911
상대가치기획센터 국장 김기성(6574) / 팀장 김선우(6576) / 담당 이연주(6560) / email: duswn974@naver.com

문서번호 대의협 제811-9396호

시행일자 2017. 12. 11.

수 신 수신처 참조

참 조

제 목 **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**

1. 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2호(2017.12.8.) "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 일부개정 안내"관련입니다.

2. 위 호 관련, 보건복지부는 「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」 제21조제2항·3항 및 「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」 제8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, 제9조제1항, 제11조제1항, 제12조제2항 및 제13조 제1항·제3항에 의한 「건강보험 행위 급여·비급여 목록표 및 급여 상대가치점수」(보건복지부 고시 제2017-222호, 2017.12.8.)를 다음과 같이 개정·발령한 바, 이를 안내합니다.

- 다 음 -

가. 주요내용

◯ 제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2단계
◯ 검체검사 영역 내 행위 재분류

나. 시행일 : 2018년 1월 1일

※ 수가체계 변경과 연계된 세부항목 등 비교표는 추후 심평원 홈페이지에서 공지 예정
※ 연계된 세부사항 고시 등은 빠른 시일 내에 행정예고 등을 통해 공지 예정

붙임 : 1. 개정고시 1부.
2. 일부개정안 1부.
3. 일부개정안(신구조문대비표) 1부. 끝.

대 한 의 사 협 회 장

"국민의 건강과 행복, 의협이 함께 합니다"

수신처 : 각시도의사회장, 각전문과목학회장, 각과개원의협의회장